

#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827
----------	--------

제안년월일 : 2023년 9월 11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 1. 수정이유

- 시장의 권한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기존 평가제도와 차별성 확보를 위해 검증대상의 선정방식,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관련 검증 절차 등을 수정함.

## 2. 수정의 주요 내용

- 정책 유효성 검증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책 등’ 및 ‘정책 유효성 검증’에 대한 정의를 수정함(안 제2조).
- 정책 유효성 검증 대상의 선정을 위해 시장은 정책 등이 시행된 3년 이내에 성과·실적을 공개하고, 여론조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그 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 유효성 검증 기준으로서 불분명하고, 모호한 규정을 삭제·수정함(안 제6조).
-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역할을 자문기능으로 조정하고, 대표성을

고려해 위원장은 시장이 되도록 하며, 여론조사·의회 권고·위원회 의결 등으로 선정된 검증대상을 심사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함(안 제7조).

- 정책 유효성 검증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하여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에서 “2024년 7월 1일” 로 수정함(안 부칙).

#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를 “행정 환경과 정책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로 하고,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없애는데”를 “떨어진 경우에 폐지할 수 있도록”으로 하며, “규정함으로써 시정운영”을 “규정하여 예산과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시정 운영”으로 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 예산의 시책, 제도 및”을 “예산 또는 인력을 투입하는 모든 시책, 제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란”을 “이란 시민이 체감하는 효율과 투입하는 자원 대비 성과를 기준으로”로 하며,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 등 정책의 지속유무”를 “평가하여 정책의 폐지 여부”로 한다.

안 제3조 중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을 “사업소”로 한다.

안 제4조의 제목 “(정책 유효성 검증의 실시)”를 “(정책 유효성 검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0년마다 정책 유효성을 재검증해야”를 “시행된 후 10년마다 정책 유효성 검증을 재실시하여야”로 한다.

-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별 정책 등이 시행된 후 3년 이내에 성과와 실적을 공개하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 만족도가 낮고 실효성

이 미흡한 경우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폐지할 수 있다.

안 제5조제1항 중 “결과를 바탕으로”를 “등을 통해”로, “정책”을 “정책 등”으로, “통보하여 폐지”를 “폐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권고대상”을 “폐지 권고대상이 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의회에서 폐지를 권고한 정책 등에 대해 그 처리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유효성 검증 기준) 제4조의 정책 유효성 검증 결과에 따라 정책 등의 폐지 여부를 심의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책 등의 존속보다 폐지가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정책 등에 대한 폐지 여부의 자문을 위해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여론조사 등을 통해 검증대상으로 선정된 정책 등과 의회에서 폐지를 권고한 정책 등을 심사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검증시점이 초과되었거나 미도래한 정책 등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해 심사할 수 있다.

안 제7조제4항(중전의 제3항) 중 “행정1부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를 “시”로 한다.

안 제7조제5항(중전의 제4항)제2호가목 중 “서울특별시의회”를 “의회”로, “2명”을 “3명”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분야별로”를 “각 분야에서”로,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직원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을 “풍부한”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목으로 한다.

안 제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4항) 중 “위촉직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한다.

안 제9조제2항 중 “시장 또는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안 제11조를 삭제하고, 안 제12조를 제11조로 한다.

안 제11조(중전의 제12조) 중 “하며, 제5조에 따라 의장이 권고한 폐지대상 정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안 부칙 중 “공포한 날”을 “2024년 7월 1일”로 한다.

#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정책 등이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없애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정책 등”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 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p> <p>2. “정책 유효성 검증”이란 정책 등의 실효성 및 성과를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 등 정책의 지속유무를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p> <p>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정책 등에 적용한다.</p> <p>제4조(정책 유효성 검증의 실시)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 등이 시행된 후 3년 이내에 정책 유효성 검증을 실시하고, 유효성 검증 결과에 따라 정책 유효성을 상실했다고 판명되는 정책은 폐지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책 유효성이 검증된 정책 등의 경우에도 10년마다 정책 유효성을 재검증해야 한다.</p> <p>제5조(정책 폐지의 권고)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의회의(이하 “의회”라 한다)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폐지 대상의 정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통보하여 폐지를 권고할 수 있다.</p>	<p>제1조(목적) ----- ----- 행정 환경과 정책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 떨어진 경우에 폐지할 수 있도록 ----- ----- 규정하여 예산과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시정 운영-----.</p> <p>제2조(정의) ----- -----.</p> <p>1. ----- ----- 예산 또는 인력을 투입하는 모든 시책, 제도, ----- -----.</p> <p>2. -----이란 시민이 체감하는 효율과 투입하는 자원 대비 성과를 기준으로 ----- 평가하여 정책의 폐지 여부-----.</p> <p>제3조(적용범위) ----- ----- 사업소-----.</p> <p>제4조(정책 유효성 검증)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별 정책 등이 시행된 후 3년 이내에 성과와 실적을 공개하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 만족도가 낮고 실효성이 미흡한 경우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폐지할 수 있다.</p> <p>② ----- 시행된 후 10년마다 정책 유효성 검증을 재실시하여야 -----.</p> <p>제5조(정책 폐지의 권고) ① ----- ----- ----- 등을 통해 ----- ----- 정책 등----- ----- 폐지-----.</p>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대상 정책 등의 선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신 설>

제6조(폐지 대상 정책 등) 제4조의 정책 유효성 검증 결과에 따라 폐지 등 정책의 지속유무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정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정책 등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책 등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 등
4.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정책 등
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정책 등
6. 시책사업 수행자 및 단체의 부조리가 발생한 정책 등
7.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업은 폐지대상에서 제외하되, 해당 위원회의 폐지 요청이 있는 정책 등
8. 그 밖에 시장이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 등에 대하여 폐지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정책유효성 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② (생략)

③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폐지 권고대상이 되는 -----.

③ 시장은 의회에서 폐지를 권고한 정책 등에 대해 그 처리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유효성 검증 기준) 제4조의 정책 유효성 검증 결과에 따라 정책 등의 폐지 여부를 심의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책 등의 존속보다 폐지가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정책에 대한 폐지 여부의 자문을 위해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여론조사 등을 통해 검증대상으로 선정된 정책 등과 의회에서 폐지를 권고한 정책 등을 심사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검증시점이 도과되었거나 미도래한 정책 등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해 심사할 수 있다.

③ (원안 제2항과 같음)

④ ----- 시장-----.

⑤ -----.

1. 당연직 위원: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

2. 위촉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나. 분야별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직원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다.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시민단체(「비영  
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  
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라. (생략)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② (생략)

③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중 제7조제4항  
제2호나목중 유관기관 직원은 그 직위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  
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생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생략)

제11조(경미한 정책 등의 폐지처리) 본청 및 직  
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정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  
한다.

제12조(관리감독 등) 시장은 정책 유효성 검증  
에 따라 폐지 대상으로 결정된 정책 등이 계  
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야 하며, 제5조에 따라 의장이 권고한 폐지대  
상 정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 시 -----

2. -----

가. 의회----- 3명

나. 각 분야에서 ----- 풍부  
한 -----

<삭제>

다. (원안 라목과 같음)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② (원안과 같음)

<삭제>

③ ----- 위촉위원-----

제9조(회의) ① (원안과 같음)

② ----- 위원장-----

③ (원안과 같음)

<삭제>

제11조(관리감독 등) -----

-----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정책 등이 행정 환경과 정책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에 폐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과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 등”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예산 또는 인력을 투입하는 모든 시책, 제도, 사업을 말한다.
2. “정책 유효성 검증”이란 시민이 체감하는 효율과 투입하는 자원 대비 성과를 기준으로 정책 등의 실효성 및 성과를 평가하여 정책의 폐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정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정책 유효성 검증)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별 정책 등이 시행된 후 3년 이내에 성과와 실적을 공개하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 만족도가 낮고 실효성이 미흡한 경우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폐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책 유효성이 검증된 정책 등의 경우에도 시행된

후 10년마다 정책 유효성 검증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 폐지의 권고)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폐지 대상의 정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폐지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폐지 권고대상이 되는 정책 등의 선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③ 시장은 의회에서 폐지를 권고한 정책 등에 대해 그 처리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유효성 검증 기준) 제4조의 정책 유효성 검증 결과에 따라 정책 등의 폐지 여부를 심의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책 등의 존속보다 폐지가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정책 등에 대한 폐지 여부의 자문을 위해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여론조사 등을 통해 검증대상으로 선정된 정책 등과 의회에서 폐지를 권고한 정책 등을 심사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검증시점이 도과되었거나 미도래한 정책 등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해 심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시 기획조정실장

2. 위촉직 위원

가.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명

나. 각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관리감독 등) 시장은 정책 유효성 검증에 따라 폐지 대상으로 결정된 정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